

『 아이부자 앱 서비스 』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아이부자 앱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아이부자 앱": "부모 회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약관 동의를 하고 관계를 설정한 "자녀 회원"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 회원"은 "용돈"의 잔액 내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기능 및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2. "아이부자 앱" 회원: "아이부자 앱"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한 고객으로 "용돈"을 주는 "부모 회원"과 "용돈"을 받는 "자녀 회원"으로 구분됨.
3. "부모 회원": "아이부자 앱"을 통해 "용돈"을 주는 회원 (만19세 이상만 선택 가능)
4. "자녀 회원": "아이부자 앱"을 통해 "용돈"을 받는 회원
5. "스마트폰 본인인증": 인증기관으로부터 SMS 인증번호를 받아 화면에 입력하는 방식
6. "간편 비밀번호": 서비스 가입 시 고객이 직접 등록한 6자리 숫자로,

로그인, 송금, “용돈”지급, 충전 등에 사용됨

7. “돈통”: “고객”이 “은행”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 제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과 연계하여 개인간 송금,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운영 및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의미하며, “아이부자 앱”에서 “용돈”을 보내거나 결제, 출금 등을 하기 위해 자금 충전이 가능함

8. “용돈”: “부모회원”이 “돈통”을 “자녀회원”에 양도한 경우 “자녀회원”이 받은 “돈통”을 의미함

9. “주식투자 연계 서비스”: 은행이 “아이부자 앱” 회원을 위하여 하나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합니다)의 주식매매 등 서비스의 목록(list)을 제공하고, “아이부자 앱” 회원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증권회사가 구축해 놓은 별도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플랫폼에 연계(link)되도록 하는 서비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돈통 이용약관』, 『하나-제로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가입대상 및 이용조건

①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소유한 개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② 1인 1기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③ 가입완료시 1개의 돈통(선불전자지급수단)이 개설되며, 아이부자 앱과 연계되어 이용 가능합니다. 단, 기존 하나은행 돈통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개설되지 않고 기존 돈통과 연계됩니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① “아이부자 앱”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은행이 요구하는 항목들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약관에 동의 버튼을 선택하여 동의 의사를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게 되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위 제1항의 약관 동의를 포함하는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은행이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신청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가입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2. 가입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가입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확인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 본인확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3. “자녀 회원” 가입신청자 중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 해설서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③ 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원은 추가적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서비스 별로 추가되는 이용약관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약관보다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④ 가입신청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시,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인의 추심이체를 위한 출금동의를

획득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이부자 앱” 또는 웹사이트 등에서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비스의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비스 해지를 하는 경우 본 서비스 이용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②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서비스 해지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은행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돈통”을 사용중인 경우 “아이부자 앱” 서비스 해지 후에도 “돈통”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본 서비스에서만 “돈통”을 사용중인 경우 “돈통” 잔액이 0원이어야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며, “돈통” 잔액의 처분은 『돈통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아이부자 앱”이 아닌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영업점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회원의 “돈통” 이용 채널과 상관없이 아이부자 서비스 해지 시점의 “돈통”잔액은 전액 환불처리됩니다.

⑤ 은행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은행은 해지 사유에 대해 “아이부자 앱”,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가입신청을 한 경우
2. 다른 회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3.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임이 확인되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3년 이상 서비스의 이용이 없는 경우. 이 경우 은행은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⑥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기관의 관련 규정 변경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은행은 “아이부자 앱” 등을 통해 안내하고, 회원에게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돈통” 잔액에 대한 처분은 『돈통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고객은 다시 은행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관련 법령, 본 약관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간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재가입 후 바로 이용하는 것에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⑧ 은행은 회원 전체에 대하여 공지사항, 서비스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아이부자 앱”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일 24시간 가능하며, 이용시간 변경 시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내용

- ① “아이부자 앱”에서는 “부모 회원”과 “자녀 회원”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서비스 내용은 “아이부자 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의 개선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규, 변경 및 철회될 수 있으며, 변경 및 철회 시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아이부자 앱”, 문자메시지, 알림톡,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 ③ “아이부자 앱” 서비스의 신규가입 및 해지는 “부모 회원”, “자녀 회원” 각각에 권한이 있습니다. 단,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녀 회원” 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 해설서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 8 조 주식투자 연계 서비스

- ① 은행은 “아이부자 앱” 회원에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계좌개설, 주식매매, 거래내역조회, 종목검색 등 증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는 본 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모 회원”과 “자녀 회원”별로 다르게 구성됩니다.
- ② “주식투자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 및 은행이 요구하는 정보(CI, 이용자의 성명 등)를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기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은행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증권회사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증권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증권회사가 “아이부자 앱”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개별 동의를 받아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부모 회원” 및 “자녀 회원”이 “아이부자 앱”의 증권회사 서비스의 목록(list)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별도의 증권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플랫폼에 연계(link)되어 이동한 경우에, 은행은 “부모 회원” 및 “자녀 회원”이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플랫폼에 편리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본인확인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합니다.

제 9 조 계좌의 이용등록 및 철회

① 회원은 “돈통” 충전을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본인인증” 인증 방식과 절차에 따라 “아이부자 앱”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등록된 계좌라도 사유 발생 시 고객의 별도 동의없이 사유 해제 시까지 사용정지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합니다.

1. 공동명의 계좌
2. 전자금융거래 제한 계좌
3. 당좌예금 등 특수한 목적이 수반된, 일반적인 입출금통장이 아닌 계좌
4. 사고신고 계좌 (압류계좌, 지급정지 계좌 등)
5. 법적 지급 제한 계좌

6. 거래중지 계좌
7. 이용계좌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계좌
8. 이용계좌 사용일 당일자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9. 본 서비스를 탈세, 범죄 수익의 합법화 등 불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단, 위에서 정한 항목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변경, 그리고 삭제 될 수 있으며 해당 목록은 이용계좌 등록 서비스 내 유의사항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 ③ 회원이 자동충전을 설정한 경우 송금, 결제 등의 거래 시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은 회원이 등록한 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아이부자 앱”에서 계좌를 변경하거나 계좌 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로그인 방법

고객이 서비스 가입 시 직접 등록한 “간편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은행은 입력된 “간편 비밀번호”를 검증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제 11 조 “간편 비밀번호” 관리

“간편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할 수 없으며, “간편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신규 가입절차에 준하여 본인 확인 후 “간편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제 12 조 이용한도

① “아이부자 앱”에서 이용하는 “돈통”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한도
적립 (돈통 잔액 증가)	1회: 500,000원 1일: 500,000원 (2,000,000원)
사용 (돈통 잔액 감소)	1회: 500,000원 1일: 500,000원
잔액 보유	500,000원 (2,000,000원)

* () 안의 한도는 “아이부자 앱”에 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한 회원이 사용할 있는 최대 한도

- ② 은행의 다른 서비스에서도 “돈통”을 사용하는 경우 “돈통” 한도는 고객 단위로 통합 관리됩니다.
- ③ 만 14세 미만 회원은 카드 및 제로페이 결제 등 결제에 대해 1일 5만원의 결제한도가 기본 적용됩니다.
- ④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거래취소로 인한 환급, 이벤트성 지급, 모으기 활동을 위한 계정이동 등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사고예방 등의 목적으로 상기 한도정책 외 한도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이용수수료

“아이부자 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수수료가 없으며, 그 외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수수료는 『돈통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4 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고객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확인하여 처리하고,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⑤ 기타 거래확인 및 거래지시의 처리기준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돈통 이용약관』, 『하나-제로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서비스 중단 및 이용의 제한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장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은행 또는 서비스 제휴사 등의 사정(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일시적 장애발생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때
 4.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은행은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을 5회 연속하여 틀릴 경우
 2. 서비스 가입 신청 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기기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4. “돈통”의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해킹 또는 고의적인 시스템 과부하 유발 행위 등 서비스 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한 경우
 6. 회원이 은행 및 타인의 권리, 명예, 신용 등을 침해하는 경우
 7. 회원이 서비스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변경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변경 전 휴대전화번호를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정당하게 입증하여 신규 회원 등록을 하는 경우
 8. 본 약관 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 그 외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한 경우
 9.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한 경우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회원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이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사진의 관리

- ① “자녀 회원”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진을 등록, 게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은행의 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자녀 회원”이 본인의 목표 관리를 위해 등록하는 사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음란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진, 차별 갈등을 조장하는 사진, 도배·광고·홍보·스팸성 사진, 계정을 양도 또는 거래하는 내용의 사진, 타인을 사칭하는 사진 등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게시, 전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모든 사진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은행의 서비스에서는 은행이 보유하지 않은 사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진에 대해서는 사진을 제공한 주체가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 17 조 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용을 고객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제 18 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고객이 서비스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은행 및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의 전송 행위

- ④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 ⑤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본 약관 등 은행의 약관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⑥ 본 서비스를 탈세, 범죄 수익의 합법화 등 불법행위에 사용하는 경우

제 19 조 손실부담과 면책사항

이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0 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서비스에 새로운 업무의 적용, 기능의 삭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기타 은행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아이부자 앱”, 은행의 웹페이지, 영업점 등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아이부자 앱” 또는 은행의 웹페이지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④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은행은 약관을 “아이부자 앱”,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돈통 이용약관』, 『하나-제로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계 법령 위반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3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